[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8. 14.>

<table>
<tr><td colspan="8">제원통보서</td></tr>
<tr><td rowspan="2">제 작 자</td><td>제작자명</td><td colspan="2"></td><td>제작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차 명</td><td colspan="2"></td><td>형 식</td><td colspan="2"></td><td>원동기형식</td><td></td></tr>
<tr><td rowspan="2">변경전차종
제원관리번호</td><td colspan="3" rowspan="2"></td><td>최초자동차
제작자</td><td colspan="3"></td></tr>
<tr><td>차대번호군
(1~8째자리)</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8">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특수장치 등 추가설명 필요시 별첨)</td></tr>
<tr><td colspan="8">「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작자 (서명 또는 날인)</td></tr>
<tr><td colspan="8">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 시행통보서 각 1부
2. 자동차의 외관도 1부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1부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의26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자료 1부</td></tr>
<tr><td>통 보 하 는 곳</td><td colspan="3">성능시험대행자</td><td>처리기간</td><td colspan="3">7일 이내</td></tr>
<tr><td>수 수 료</td><td colspan="7">없음</td></tr>
</table>

210㎜×297㎜

(일반용지 60g/㎡)